

번 호	21호
일 시	2016.12.09

當面主要懸案事項

- 2016. 12. 9(금) 이장회의 -



『2016 하반기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금 남 면

총무 담당
 1. 12월 문화공연 안내 ···································
주민생활지원 담당
1. 희망 2017 사랑의 열매 성금모금 추진 2
2. 2017년 공동묘지 정비사업 대상지 신청3
3. 2017년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수요조사3
4. 경로당 안전점검 신청 안내 4
신업경제 담당
1. 2016년산 벼 보급종 수요조사5
2. 강원도 찰옥수수 종자 수요조사6
3. 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안내 6
4. 2016년 12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 ·············· 7
5. 2016년 겨울철 산불예방 특별강화활동 실시 9
민월 달당
 1.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징수·······10
2.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10
3.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 협조 11

총무담당 소관

12월 문화공연 안내

담당자 : 이병태

(28) 880-6205

□ 제6회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 일 시 : 2016. 12. 14(수) 19:00

○ 장 소 :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특별출연 : 시니어 합창단, the VOICE

○ 추죄·주관 : 하동합창단

□ 조영남 갈라쇼

○ 일 시 : 2016. 12. 23(금) 18:30

O 장 소: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협조사항

O 문화공연 주민 홍보

주민생활지원담당 소관

1 회망 2017 사랑의 열매 성금모금 추진

담당자 : 강지연 (☎) 880-6229

□개 요

O 모금기간 : 2016. 1. 31.까지

※ 집중모금기간 : 2016. 12. 5. ~ 2017. 1. 31.

O 모금주체 :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O 모금방법

- '사랑의 열매 달기' 면사무소 성금함 모금

- 언론기관 모금

방송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KBS	사형	301-1113-1113-81	경남공동모금회 (진주KBS)	T 055)740-7126	
진주	경남	511-32-0000360	진주KBS 경남공동모금회	F 055)740-7499	
MBC	농협 301-1115-1115-(경남모금회(진주) 경남MBC	T 055)771-2127	
진주	경남	511-22-1042893	경남MBC(진주) 경남모금회	F 055)751-2109	

- 사랑의 계좌모금(예금주 : 경상남도공동모금회)

· 농 협: 301-0032-9329-11(일반) / 849-01-292661(지정)

□ 경남은행 : 511-32-0000343(일반) / 579-07-004456(지정)

□ 협조사항

O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열매를 매개체로 침체된 사회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성금모금활동에 적극 동참 2 2017년 공동묘지 정비사업 대상지 신청

담당자 : 이상하 (悉) 880-6227

□ 개 요

O 신청기한 : 2016. 12. 14.(수)

O 사 업 량 : 군 전체 3개소

O 사 업 비: 1개소당 15,000천원 내외

O 사업대상

- 공동묘지 이용률은 높으나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공동묘지

□ 협조사항

O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2017년 농촌 집 고쳐주기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 김창민

(28) 880-6228

□ 개 요

O 신청기한 : 2016. 12. 12.(월)

O 대상가구 : 차상위계층으로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

○ 지원금액: 가구당 340만원(자부담 5%포함)

O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의 경보수, 중보수 지원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지 교체 등 / 중보수 : 단열, 난방, 화장실, 부엌정비 등

- O 우선순위
 - 장애인 가구 > 독거노인가구(70세 이상) > 다문화 가구 > 기타 소득비율
- O 사업시행 : (재) 다솜둥지복지재단

□ 협조사항

O 신청가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미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

경로당 안전점검 신청 안내

담당자 : 이상하 (悉) 880-6227

□ 개 요

O 신청기한 : 2016. 12. 12.(월)까지

O 신청 대상시설 :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O 선정기준 :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사용인원, 시설물 경과연수 등

O 점검분야 : 건축분야, 옥외시설분야, 일반분야 등

O 점검시행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협조사항

O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로당 신청협조

산업경제담당 소관

1

2016년산 벼 보급종 수요조사

담당자 : 정광임

(28) 880-6213

□ 개 요

O 신청기간: 2016. 12. 7 ~ 12. 15

○ 품종(6종): 운광벼, 동진찰벼, 새누리, 새일미, 추청벼, 영호진미

O 신청단위 : 20kg/포

O 주의사항: 미소독·소독 종자 구분하여 신청

- 친환경 벼 재배농가는 미소독 종자 신청불가

○ 신청서식 (단위: 20kg/포)

اردنم	7) 14	-1-1-1-1	, -	. 1 . =	-1)	.))] =)	יורטורי	الراح ا	ラニい	ا - ا - ا	E-1-1-1
연번	성 명	전화번호	소 독	미소독	계	새누리	새일미	운광벼	추청벼	영호진미	동진찰벼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

강원도 찰옥수수 종자 수요조사

담당자 : 정광임 (☎) 880-6213

□개 요

O 품 종: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 포장단위 : 1kg/봉

O 가 격: 25,000원/봉

O 공급시기 : 2017. 1. 9 ~ 2. 10

O 신청기간 : 2016. 12. 12(월)까지

연 번	성명	전화번호	신청량(1kg/포)	비고
1				
2				
3				
4				

3

<u>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안내</u>

담당자 : 정광임

(28) 880-6213

□ 지원배경

O 제18호 태풍(차바)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와 수발아 피해발생농가의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한계가 있어 특별융자금 지원 필요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태풍(차바), 수발아, 감 꼭지들림 등 피해농가

O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 전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 농작물 피해농가 : 농가당 피해면적 × 품목별 2회전(2년) 소요경영비

- 시설물 피해농가 : 시설물 복구소요금액 이내

O 대출조건

- 이 자 율 : 고정(2.5%) 또는 변동금리(10.31일 기준 0.99%, 6개월 변동) 선택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O 신청기간 : '16.12.1. ~ '17.1.31. (2개월)

O 신청서 서식 : [붙임 1] 참고

2016년 12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

담당자 : 유성룡 (☎) 880-6214

= 2016년 12월중 =

불법어업 지도 · 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 국가어업지도선 해상단속 계획

- ㅇ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을 해역별 상시 배치
- 동해(한일중간, 동해중·남부, 동해일원), 남해(동부, EEZ), 제주(근해,EEZ)
- 중점 지도·단속 업무

헤역	중점 지도단속 대상	비고
공통	 ○ 김장철 새우조망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매년 김장철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부산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남 새우조망어선들 11월~12월 간 육상 및 해상에서 집중 단속 실시 ○ 한일 어업 입어협상 미합의에 따른 우리어선 일본 EEZ 피랍방지 지도 및 홍보 	* 동해어업관리단 주관 (지자체, 해경 등 참여)
남해	○ 멸치 포획 (쌍끌이중·대형저인망) / 멸치 외 어종포획 (권현망) ○ 중대형저인망 허가 외 어구(전개판) 사용·적재 행위 ○ 잠수기 불법어구 (흡입기, 분사기사용 바지락 채취) 사용 행위	

② 육상단속 활동계획

- 새우조망 입출항 정보 확인 및 어구 막대길이, 날개그물 크기 등 불법 어구 적재 여부 집중 점검
-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행위
- (주요어종) 붕장어, 돌돔, 감성돔, 볼락, 농어, 쥐노래미, 말쥐치 등
- (쌍끌이저인망) 참조기, 갈치, (대형선망) 갈치, 고등어, (정치망) 오징어
- ㅇ 쌍끌이저인망의 멸치 포획 및 권현망의 멸치 외 어종 포획 행위

12월 중 어종별 중점 관리 대상

어종	금지 체장	금지 기간	12월 주요 단속대상	해역	비고
대게	두흉갑 장 9cm,	6.1~11.30 * 법령 참조 필요	- 금지체장 및 암컷 대게 포획·유통·판매	동해	
대문어	금지체 중 400g	_	- 금지체중 포획·유통·판매	동해	조정
문치 가자미	15cm	12.1~1.31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포획·유통· 판매	동해 남해	조정
쥐노래 미	20cm	11.1~12.30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포획·유통· 판매	동해 남해	
말쥐치	18cm	5.1~7.31	- 금지체장 포획·유통·판매	동해 남해	신설
감성돔	20cm	_	- 금지체장 포획·유통·판매	동해 남해	종묘방류
멸치	_	업종별 별도 설정 * 법령 참조 필요	- 쌍끌이중·대형저인망 포획·유통·판매 - 소형선망, 근해·연안자망 포획금지구역 위반	· 남해	
민꽃게 암컷	_	연중	- 연안자망, 통발어선 포획·유통·판매	남해	신설
돌돔	24cm	_	- 금지체장 포획·유통·판매	남해	종묘방류
볼락	15cm	_	- 금지체장 포획·유통·판매	남해	종묘방류
붕장어	35cm	_	- 금지체장 포획·유통·판매	남해	
농어	30cm	_	- 금지체장 포획·유통·판매	남해	
전복류	각장 7cm (제주산 은 10cm)	9.1~10.31 (제주도는 10.1~12.31)	-금지체장 및 기간 위반 포획·유통· 판매	남해 제주	
갈치	항문장 18cm	7.1~7.31	- 금지체장 위반 포획·유통·판매	남해 제주	신설
고둥어	21cm	5.1~5.20 * 법령 참조 필요	-금지체장 위반 포획·유통·판매 (대형선망 중점 관리 필요)	제주	신설
참조기	15cm	7.1~7.31	- 쌍끌이중·대형저인망 금지체장 위 반	제주	신설

^{* (}금지기간) **갈치, 고등어, 참조기**는 총 어획량 중 해당어종을 10% 미만 어획하는 경우는 제외

^{** (}금지체장) 갈치, 고등어, 참조기는 해당 어종의 총 어획량 중 금지체장 어획물이 20% 미만 어획하는 경우는 제외

2016년 겨울철 산불예방 특별강화활동 실시 (☎) 880-6214

담당자 : 유성룡

□ 산불예방 홍보 및 협조사항

- O 산불예방 중점기간 : '16. 11. 1 ~ '17. 5. 15
- O 산불 취약지역: 산불발생 위험지역(산림변, 산 연접 농경지, 도로변, 등산로 주변, 등)
- 산불예방 중점 홍보(지도) 내용
 - 산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신혼부부 예단 태우기, 산림 내 무속행위
- 중점 관리대상 : 노·고령자, 정신박약자, 농산폐기물 상습 소각자, 산지 내 경작자
- O 산불발생 시 협조사항
 - 상황신고 :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880-6212 ~ 4, 119센터(당직) 884-6619 주민동원 진화 참여
- O 위반자 처벌규정 엄격 적용
 - 위반자는 사유서 징구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주민 경각심 고취
 - 처벌규정 안내 및 안일한 판단 및 부주의로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계도(안내) 철저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50만원 과태료 처분
- O 중점 협조사항
 - 야간 취약시간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가 금지

민원담당 소관

1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징수

담당자 : 하경숙

(28) 880-6225

□ 개 요

○ 추진기간 : 2016. 10. 4. ~ 2016. 12. 31.(3개월)

○ 체납현황 : 1,613건/161,093천원 (2016. 12. 5. 기준)

(단위: 천원)

등록단	변허세	주	민세	자동	통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	득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70	756	77	4,467	266	26,995	1,151	55,092	43	72,650	6	1,133

□ 협조사항

- O 체납자는 각종사업, 보조금지원, 표창대상 등의 행정지원 배제대상임을 안내
- O 체납자 납부독려 및 담당마을 공무원과 합동징수 협조
- O 관외 체납자의 주소지 및 연고자 파악 협조
- O 자동이체 신청 병행 홍보

(붙임2) 체납세 방송 홍보(안) 1부.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

담당자 : 하경숙

(28) 880-6225

□ 추진계획

- 납세의무 대상자 : 2016. 12. 1일 기준 소유자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스트럭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삼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 O 납부기간 :2016. 12. 16 ~ 12. 31

- 과세 기간과 납기
 - 정기분

기별	기간	납기
제 1 기분	1 ~ 6월	6. 16 ~ 6. 30
제 2 기분	7 ~ 12월	12. 16 ~ 12. 31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액은 1기분(6월)을 부과할 때 전액 부과·징수(경차, 화물차 등)
-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인정기준 : (붙임2) 참조

□ 협조사항

O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홍보(붙임3)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 협조

담당자 : 하경숙 (☎) 880-6225

□ 개 요

○ 도입배경 : 자영업자 등 폐업신고 시 하동군청(인허가부서)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관청)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O 내 용: 폐업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O 대상업종 : 식품관련영업, 낚시어선업 등 49개업종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하동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 협조사항

O 해당업종 관계자 서비스 홍보 협조

(붙임4) 대상업종 현황 1부.

[붙임 1]

재해대책특별융자금 신청서

발급번호 : 00읍·면 제00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홍길동 (주민번호:	-)	(서명)	
○ 주	소:				
○ 전화번	호 :	(휴대폰 :)
	액 : 0 0 백만원 (백만원 년 배출취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	,	ᅦ따ᅙ	마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취	급 금융기관 : 00농협				

□ 농가당 융자규모(신청 농가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 m², 원)

					(– , , _
품	목	피해지번	피해면적 (A)	1기 경영비 (B) [년1기작/10a]	용자규모(C) (C=A×B×2/1,000)
		00읍 00길 00번지	m²	원	원
		00읍 00길 00번지	m²	원	원
		00읍 00길 00번지	m²	원	원
합	계	00필지	m²	원	원

※ 10a = 1,000m² 적용, 경영비는 농진청 '15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http://amis.rda.go.kr) 기준 적용

확인자: 00 면 · 읍 00계 담당자 000 (서명), 연락처

태풍(차바) 및 수발아 피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00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인정기준≫

- ①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화재사실 확인원(증명서),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 기록, 현장사진 등을 확인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멸·멸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
 - ☞ 당해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날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취소
- ② <u>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행한 폐차장입고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면</u> 서 사실상 폐차(소멸·멸실)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자동차폐차업소에 문서로 폐차일 등 폐차사실(폐차된 차량사진 첨부)을 조회한 결과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여 사실상 폐차되었음이 확인되고, 자동차등록원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법규 위반사실, 자동차검사여부, 번호판영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차일 이후 당해 자동차의 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하고

- ☞ 당해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소멸·멸실)된 날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취소
- ③ 차령이 10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은 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 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4년) 이상 이행하 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된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 위반사실, 주·정차위반여부, 번호판영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

- ☞ 당해차량의 최종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중 기간이 긴 기간(둘 중 날짜가 나중 것)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취소
- ☞ 다만, 교통법규위반사실 등 운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일 등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취소

(붙임3)

『체납세 납부 홍보 방송(안)』

- ○○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에서 체납세 납부에 관하여 (다시 한번)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 등 체납세가 있으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입금을 통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방문시에는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체납세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반복 1회)

이상은 ○○마을회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연번	처리 방법	소관 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1	선로 접고료 송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관련영업	▶ 식품제조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식품 운반업 ▶ 식품 소분업 ▶ 식용얼음 판매업 ▶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 유통 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기타 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지 제조업 ▶ 용기를 제조업 ▶ 홍기류 제조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위탁급식 영업 ▶ 제과점 영업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	처리		의료기기업	▸의료기기 판매업 ㆍ의료기기 임대업	↑ 신고증	•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3		보건	소독업	· 소독업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4		복 지 부	공중위생영업	ㆍ숙박업 ㆍ목욕장업 ㆍ이ㆍ미용업 ㆍ세탁업 ㆍ위생관리용역업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5	수동	그 영 내 땅 파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6	6 택 , 편 로 접 우 이 이 폐	공 정 거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ㆍ신고증 원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7	신고 자료	래 위 원	전화권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이송 처리	히	방문판매신고업	· 방문판매신고업	ㆍ신고증 원본	제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9		국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연번	처리 방법	소관 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토교		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록증 사업폐지의사 결정 증명서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10		통 부	자동차관리사업	가동차매매업가동차정비업가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11		기획	담배소매업	· 담배소매업	없음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12		재 정 부	담배판매업	▸ 담배도매업	없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3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상인	→ 등록증	・축산법 제34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3
14			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업	없음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5			가축인공수정소	· 가축인공수정소	▶ 신고필증	・축산법 제17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16			농어촌관광휴양 사업	↑ 관광농원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자신고필증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8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17		농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도매업・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18		0 림 축 산 식 품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 등록증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1조
19		부	부화업	▶ 부화업	• 허가증 (행정정보공동 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0			정액 등 처리업	·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 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1			종축업	· 종축업	• 허가증 (행정정보공동 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2			동물병원	↑ 동물병원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수의사법 제1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23			비료생산업	▸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등록증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24		문 화 체 육	관광사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었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연번	처리 방법	소관 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 유원시설업 ▸ 여행업			
25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 등록증	▶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26			잡지 등 정기간 행물	ㆍ잡지외 간행물사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7	광	한 한 파	체육시설업	· 골프연습장업 · 당구장장업 · 무도학원업 · 빙상장장업 · 성명장장업 · 성명장장업 · 설매장장업 · 설매장장업 · 설대장장업 · 설대장장업 · 설대장장업 · 세육도장업 · 체육도장업 · 체육도장업 · 기누장업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8			게임제작 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9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0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31		보건 복지 부	Ų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 신고필증 ▶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세3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2			약국, 의약품판 매업 등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약국 · 의약품판매업	· 등록증 (허기증, 신고증)	· 약사법 제22조 및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33			장사시설업	· 장례식장	▶ 영업신고 확인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34		산 업 통 상 자 원	계량기사업자업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 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연번	처리 방법	소관 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35		부	석탄가공업	· 석탄가공업	→ 없음	・석탄산업법 제22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6		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전체품목제조 신고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7		약 품 안 전 처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38			가정폭력 상담 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39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 등록증 ▸ 이용자 - 조치계획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40		여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지내고 ! →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1		성 가 족 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설치신고필 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42			성폭력상담소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 신고증 또는 인기증 *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3		환 경 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가축분뇨 처리업가축분뇨 시설관리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연번	처리 방법	소관 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44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45		해 양 수 산 부	수산질병관리원	· 수산질병관리원	›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46			낚시어선업	▸ 낚시터업 ▸ 낚시어선업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제39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47			허가어업 관련업	↑구획어업 ㆍ육상해수 양식어업 ㆍ종묘생산어업	 ⁺ 어업허기증 또 는 어업신고증 명서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48		해0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업	▶ 등록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49		정 자 치 부	행정사 업무	▸ 행정사	* 행정사 자격증 사본 *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행정사법 제16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